

무배당 미래에셋 자산관리
신탁적립보험 약관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미래에셋 자산관리 신탁적립보험 약관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6조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의 일환으로 미래에셋생명 보험회사와 퇴직연금 이월보증형(이월보증형Ⅱ)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업자’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2. ‘보험료’라 함은 신탁업자가 계약자로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는 신탁업자로 합니다.

제4조 (수행업무)

① 신탁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신탁업자는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운용지

시에 의해 본 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신たく업자는 본 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험료의 수령
2.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의 지급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전문을 통한 전자적 거래시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기간)

본 계약의 보험기간은 회사의 승낙이 이루어진 날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9조 (단위보험)

① 이 계약에서 “단위보험”이라 함은 회사가 계약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설정되는 것으로 하며, 각 단위보험

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이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시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의 보증기간 중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을 설정하며,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회사가 결정한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합니다.

③ 계약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의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으로의 변경 요청이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적용이율)

①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의 적립금에 대한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로 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은 지표금리, 시장상황, 회사손익 및 보험료 속성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 산출기준”(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의 통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지연율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 (해지환급금)

- ① 해지환급금은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별표1 참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한 해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율보증형Ⅱ의 경우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율보증형Ⅱ의 다른 보증기간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의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의 승계)

계약자는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신탁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회사는 본 보험계약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1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17조 (계약의 소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 of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협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에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4조 (준거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제2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됩니다.(단, 확정급여 형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1]

중도해지이율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해당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 납입건별로 중도해지이율(이율보증형(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 80%)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이율보증형Ⅱ의 경우 단위보험 설정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율보증형Ⅱ의 다른 보증기간으로 변경하거나 당사의 이율보증형 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2]

적용이율 산출기준

1. 이 보험의 제도유형별 적립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율은 적용이율로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구분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II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5년	5년 이율보증형 II 적용이율

2.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가. 이율보증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1)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 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3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5년 이율보증형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A1 : 국고채(5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5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평균값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제 '가'항에서 정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후부터 적용합니다.

나. 이율보증형Ⅱ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 (1)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합니다.
- (2)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CD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합니다.

[1년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times 50\% + (A3 + A4 + A5 + A6) / 4 \times 50\%$$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1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4 :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5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6 : CD(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2년 이율보증형Ⅱ 적용이율]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times 50\% + (A3 + A4 + A5 + A6) / 4 \times 50\%$$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만기, 무보증, AAA) 수익률의 평균값

A3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4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5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6 : CD(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3년 이율보증형Ⅱ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times 50\% + (A3 + A4 + A5 + A6) / 4 \times 50\%$$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4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5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6 : CD(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5년 이율보증형Ⅱ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times 0.7 + A2 \times 0.3) \times 50\% + (A3 + A4 + A5 + A6) / 4 \times 50\%$$

- A1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 A2 : 회사채(5년만기,무보증,AAA) 수익률의 평균값
- A3 :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4 : 회사채(3년만기,무보증,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5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6 : CD(91일)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 \times 1 + Mi(-2) \times 2 + Mi(-1) \times 3] / 6$$

Mi(-3)은 직전3개월, Mi(-2)은 직전2개월, Mi(-1)은 직전1개월 이율이며,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

까지의 회사채평균수익률, 국고채평균수익률, 통화안정증권평균수익률 및 CD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 1. 국고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2. 회사채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3. 통화안정증권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4. CD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CD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합니다.
5. 평균값은 산출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6번째 영업일에서 15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 수익률을 산술평균하는 것으로 한다.
6.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 수익률이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 (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적용이율의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산출방식 변경시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는 제 '나'항에서 정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후부터 적용합니다.

3. 회사는 년2회 이상 적용이율의 변경내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4.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운용지침을 따릅니다.